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7.)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 목 차

I. 검토경과 .....	1
II. 제출근거 .....	1
I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1. 결산총괄 .....	1
2. 세입결산 .....	2
3. 세출결산 .....	2
4. 세입·세출 처리상황 .....	2
5. 일반회계 세입결산 .....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6
9. 계속비 결산 .....	7
10. 예비비 지출 .....	8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	9
IV. 기금결산 .....	10
V. 채권액결산 .....	11
VI. 채무액결산 .....	12
VII. 보조금결산 .....	12
VIII. 기타의견 .....	13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18. 9. 21.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8. 9. 21.
- 의안번호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2018~59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2018~60호)

##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I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결산총괄(결산서 p21)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647,714	683,952	431,919	252,033
일반회계	576,360	610,800	398,098	212,702
특별회계	71,354	73,152	33,821	39,331

##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647,714	686,999	683,952	3,047	689	2,358	105.6	99.6
일반회계	576,360	613,215	610,801	2,414	646	1,768	106.0	99.6
특별회계	71,354	73,784	73,151	633	43	590	102.5	99.1

## 3. 세출결산(결산서 p33)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집행잔액 G=C-E-F	불용비율 G/C (%)
계	570,863	76,851	647,714	485,512	431,920	83,472	132,322	20.4
일반회계	505,735	70,625	576,360	446,443	398,099	75,085	103,176	17.9
특별회계	65,128	6,226	71,354	39,069	33,821	8,387	29,146	40.8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 200백만원 포함

##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683,952	431,919	252,033	44,176	28,910	10,186	3,919	164,842
일반회계	610,801	398,099	212,702	38,945	25,954	10,186	3,847	133,770
특별회계	73,151	33,820	39,331	5,231	2,956		72	31,072

##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0)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613,215	610,801	2,414	646	1,768	99.6
지방세수입		27,927	26,748	1,179	113	1,066	95.8
세외수입		20,319	19,084	1,235	533	702	93.9
	경상외수적입	7,644	7,614	30		30	99.6
	임시외수적입	12,675	11,470	1,205	533	672	90.5
지방교부세		234,611	234,611				100.0
조정교부금등		27,124	27,124				100.0
보조금		146,707	146,707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6,527	156,527				100.0

##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64)

###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576,360	446,443	398,099	75,085	103,176
의회운영위원회	883	812	812		71
총무위원회	288,957	198,857	195,335	7,286	86,336
산업건설위원회	286,520	246,774	201,952	67,799	16,769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76,360	446,443	398,099	75,085	103,176
의 회 사 무 과		883	812	812		71
총 무 위원회	소 계	288,957	198,857	195,335	7,286	86,336
	기 획 감 사 실	83,184	9,620	9,598	20	73,566
	민 원 봉 사 실	1,392	1,289	1,289		103
	행 정 과	63,810	57,314	57,309		6,501
	기 업 지 원 과	1,724	1,189	1,152	37	535
	재 무 과	3,804	3,402	3,294	107	403
	복 지 정 책 과	88,651	85,683	85,175	494	2,982
	문 화 관 광 과	12,921	11,406	10,551	1,631	739
	보 건 소	9,912	6,919	6,919	2,365	628
	평 생 교 육 센 터	5,972	5,658	5,639		333
	체 육 시 설 사 업 소	7,289	6,360	5,065	1,951	273
	읍 면	10,298	10,017	9,344	681	273
산업건설 위원회	소 계	286,520	246,774	201,952	67,799	16,769
	안 전 총 괄 과	7,816	6,980	6,318	1,063	435
	경 제 교 통 과	17,223	12,661	12,260	3,347	1,616
	산 림 과	24,237	20,664	17,469	5,423	1,345
	환 경 과	20,143	19,029	16,409	3,155	579
	건 설 과	66,467	55,071	43,220	20,735	2,512
	도 시 건 축 과	46,379	43,675	26,655	16,944	2,780
	농 업 기 술 센 터	78,127	62,874	53,888	17,045	7,194
	수 도 사 업 소	25,278	24,990	24,903	87	288
	거 창 사 건 관 리 소 사 업 소	850	830	830		20

##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 입(결산서 p40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징 수 결 정 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73,784	73,152	632	42	590	99.1
	공 기 업	40,686	40,605	81	17	64	99.8
	의 료 보 호 기 금	835	835	0	0	0	1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5	405	0	0	0	100.0
	주 차 장 관 리	1,136	585	551	25	526	51.5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6,067	6,067	0	0	0	100.0
	수 질 개 선	5,516	5,516	0	0	0	1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93	693	0	0	0	100.0
	농 업 발 전 기 금	18,446	18,446	0	0	0	100.0

### ○ 세 출(결산서 p40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71,354	33,962	33,820	8,388	29,145
공 기 업	39,840	22,016	22,016	7,479	10,345
의 료 보 호 기 금	836	751	751	0	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3	393	393	0	0
주 차 장 관 리	593	134	134	0	459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295	1,822	1,791	452	3,052
수 질 개 선	5,539	5,092	5,063	378	98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90	689	609	79	1
농 업 발 전	18,168	3,065	3,063	0	15,10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93)

□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96)

□ 전 용(일반회계) (결산서 p39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1건	22,143	539	539	

※ 세부내역 : 결산서(p397)

**검 토 의 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산불진화 신규차량 구입,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지원 사업량 증가, 쌀·밭조건 불리직불금 예산 부족, 청소년 수련관 직영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결산서 p399)

○ 내역 : 8건 66,627천원

○ 사유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

※ 세부내역 : 결산서(p399)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7. 7. 3. 훈령 제409호)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업무가 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7. 9. 5일 문화관광과로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9. 계속비 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501)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총 투 자 액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b>합 계</b>	<b>96,318,346</b>	<b>81,019,264</b>	<b>588,492</b>	<b>29,186,322</b>	<b>16,574,228</b>	<b>21,072,397</b>	<b>585,643</b>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00,000	4,611,508	588,492	1,758,322	1,172,679	0	585,643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2,998,830	1,120,206	0	1,878,924	682,242	1,196,6830	0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3,100,000	2,449,529	0	1,834,121	1,370,035	464,086	0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200,000	70,882	0	200,000	70,882	129,118	0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0,000	254,159	0	73,110	27,269	45,841	0
농촌테마공원 조성	11,787,159	9,952,157	0	3,252,814	3,032,384	198,478	0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	14,978,440	13,818,475	0	3,423,827	3,050,134	373,693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31,289,091	26,287,357	0	8,331,516	2,678,475	4,875,577	0
권역단위종합개발	24,805,826	22,082,780	0	6,774,688	4,117,917	1,731,985	0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100,000	33,455	0	100,000	33,455	66,545	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200,000	78,113	0	200,000	78,113	121,887	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439,000	260,643	0	439,000	260,643	178,357	0
시군창의	677,000	0	0	677,000	0	677,000	0
취약지구개조(궁항지구)	243,000	0	0	243,000	0	243,000	0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관리하며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총 14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401)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b>합 계</b>			<b>1,340,377</b>	<b>1,041,512</b>	<b>1,041,512</b>	<b>0</b>	<b>298,864</b>
건 설 과	농업·농촌	한발대비 용수개발	60,000	44,914	44,914	0	15,086
	농업·농촌	한발대비 용수개발	60,000	0	0	0	60,000
	농업·농촌	한발대비 용수개발	475,000	405,946	405,946	0	69,054
	농업·농촌	한발대비 용수개발	525,000	376,506	376,506	0	148,494
농업기술 센 터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4,410	4,410	4,410	0	0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7,500	5,595	5,595	0	1,905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10,000	9,579	9,579	0	420
	농업·농촌	벼 병해충 방제	186,267	182,362	182,362	0	3,905
	농업·농촌	벼 병해충 방제	12,200	12,200	12,200	0	0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017년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개발사업임.
- 농업기술센터는 경북 김천지역 내 야생조수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과 관련하여 경북도 경계지역에 긴급 방역초소 운영과 멸강나방 긴급 방제사업으로 재정집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525)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293	227,859	75,085	
명 시 이 월	105	87,196	38,946	
사 고 이 월	162	120,037	25,953	
계 속 비 이 월	26	20,626	10,186	

## 검 토 의 견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 IV 기금결산(결산서 p489)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b>계(7종)</b>	<b>13,385,704</b>	<b>179,470</b>	<b>763,932</b>	<b>584,462</b>	<b>13,565,174</b>
식 품 진 흥 기 금	65,562	944	5,944	5,000	66,506
중소기업육성기금	6,584,745	△24,519	111,573	136,092	6,560,226
사 회 복 지 기 금	4,026,403	36,575	106,516	69,941	4,062,978
재 난 관 리 기 금	884,139	142,711	487,790	345,079	1,026,85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0,318	128	7,628	7,500	500,446
옥외광고정비기금	235,219	25,060	25,910	850	260,279
체 육 진 흥 기 금	1,089,318	△1,429	18,571	20,000	1,087,889

## 검 토 의 견

- 2017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조성액은 13,565,174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3,932천원이고, 사용액은 584,462천원으로 179,470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도 노력이 필요함.

## V 채 권 액 결 산(결산서 P657)

### ○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883,974	220,151	213,945	4,890,180
일반 회계	소 계	4,488,827			4,488,827
	전화선예치금	12,474	-	-	12,474
	학자대여금	4,343,353	-	-	4,343,353
	회 원 권	133,000	-	-	133,000
특별 회계	농업발전기금	5,250	-	-	5,250
기금	사회복지기금	389,897	220,151	213,945	396,103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883,974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20,151천원이 발생하고, 213,945천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890,180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396,103천원, 보증금채권 145,474천원, 융자금 채권 4,348,603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전화 예치금과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학자대여금과 농업발전 기금임.

## VI 채무액 결산(결산서 p665)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 VII 보조금 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24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b>합 계</b>	<b>194,939,848</b> (70,472,158)	<b>195,404,238</b> (71,700,306)	<b>158,581,400</b> (50,659,783)	<b>29,426,224</b> (16,729,688)	<b>7,396,614</b> (4,310,835)	
일 반 회 계	188,293,884 (69,595,894)	188,758,274 (70,824,042)	152,626,189 (50,024,660)	28,808,466 (16,489,909)	7,323,619 (4,309,473)	
특별 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30,000	29,928	-	72
	의료보호기금	250,985	250,985	183,298	-	67,687
	산업단지조성사업	930,000 (870,000)	930,000 (870,000)	689,793 (629,793)	239,779 (239,779)	428 (428)
	수질개선	5,434,979 (6,264)	5,434,979 (6,264)	5,052,192 (5,330)	377,979 -	4,808 (934)

- ※ 군비부담액은 71,700,306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6.7%에 해당함
- ※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 검 토 의 견

- 2017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95,404,238천 원으로 예산액 194,939,848천원 대비 100.2%이고, 집행액은 158,581,400천원으로 예산액의 81.3%이며, 29,426,224천원이 이월되고 7,396,614천원을 반납하였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70,824,042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7.5%에 해당됨.

## VIII 기타의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급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재정 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재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17년도 예산현액은 647,714백만원이고, 이월액은 83,47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4,842백만원으로 38.3%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610,80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115백만원 (16.6%)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34,611백만원(38.4%)이고, 보조금 146,707백만원 (24.0%), 조정교부금 27,124백만원(4.4%), 지방세는 26,748백만원 (4.3%), 세외수입은 19,083백원(3.1%)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 재원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임.
- 2017년 12월말 인구수(62,763명) 기준으로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9,731,858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426,181원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 (7.7%)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세출은 398,0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755백만원 (7.8%)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22.8%), 농림해양수산 (18.9%), 국토 및 지역개발(11.7%), 환경보호(10.4%)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1,900백만원(43.5%)이며, 산업·중소기업은 △3,937백만원(△51.6%)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그리고 집행률은 산업·중소기업이 47.9%, 수송 및 교통이 59.3%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 13,565,175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3,932천원이고, 사용액은 584,462천원으로 179,470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은 낮은 편으로
-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최근 시행중인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집단민원 발생, 인근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한 실정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